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58
----------	-------

발의연월일 : 2026. 8. 12.

발 의 자 : 민병덕 · 이수진 · 송재봉
김문수 · 권향엽 · 김태년
김영배 · 이강일 · 진성준
전종덕 · 오세희 · 정진욱
이주희 의원(13인)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은 군사권위주의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수호한 우리 헌정사상 중대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됨.

그럼에도 5·18민주유공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대상에 머무르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는 명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4·19혁명 참가자는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국가보훈의 대상으로 예우하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보여주는 것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민주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한 희생 및 공헌을 고려할 때, 5·18민주유공자 역시 국가유공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

가 있음.

이에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되, 구체적인 지원은 현행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의 근거를 마련하려 함.

주요내용

- 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유공자의 적용 대상에 포함함(안 제4조제1항제19호 신설).
- 나.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 다. 이 법 시행 당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는 개정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둠(안 부칙 제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5·18민주유공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는 제4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 18. (생 략) <u><신 설></u>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 ----- ----- ----- ----- ----- 1. ~ 18. (현행과 같음) 19. <u>5·18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u>② ~ ⑤ (현행과 같음)</u> <u>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u> <u>⑦ (현행 제6항과 같음)</u>
② ~ ⑤ (생 략) <u><신 설></u>	
<u>⑥ (생 략)</u>	